

구조조정과 소득보전의 쌍두마차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농업의 전망 및 대책-



■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과수농가에 나타나게 될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내 과수농가에 대한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이 필수적이다.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복 승아의 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포도는 우리나라의 단경기인 11월부터 4월까지의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며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조치를 2008년부터 해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칠레간 FTA 체결로 인한 과일농가의 소득감소는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과와 배가 예외품목으로 인정된 협의안은 사과와 배에 대한 TRQ를 요구한 칠레의 안을 수용

한 것에 비해 농업 피해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사과와 배에 대한 TRQ 수입 허용은 식물검역 규제의 해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TRQ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이루어져 과일농가의 소득감소는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 해제 초기에 2천억원 이상이 될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과일농업은 관세와 식물 검역 조치 가운데 식물검역에 의존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은 물론 향후 이어질 DDA협상, 양자협상 등에 있어서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이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관세수준 이상으로 크고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므로 관세를 통한 시장 보호 기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쿼터의 허용은 그 규모와 칠레의 수출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DDA협상 이후에 관세감축을 포함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협상이 있을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칠레와의 FTA협정 체결로 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나타나게될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가격하락 등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폐원 보산제도를 도입하여 폐원을 유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하여는 소득 보전 방식을 병행하여 과수산업 구조조정과 소득보전을 동시에 실시한다.

도표에서 사과의 경우를 예로 보 상방안을 나타냈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과일 및 과채류 포함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과일 전체 (억원)	FTA미제결시		18,132	21,891	21,635	26,422	21,330	21,265
	타결안		18,103 (29)	21,860 (31)	21,590 (45)	26,356 (64)	21,078 (252)	20,810 (456)
	칠레요구안	15,775	18,015 (117)	21,770 (122)	19,546 (2,088)	23,302 (3,120)	21,011 (319)	20,679 (586)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원 개원시 농가는 일정기간동안 생산을 통한 기대소득을 예상하고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폐원보상은 농가의 기대소득을 고려한 기대소득 보상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원보상제도는 식물검역 해제로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실시하고 칠레산 과일이 수입될 경우 소득보전 직불제에 의한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조기 폐원 유도를 위한 연차별 보상 차등률을 적용한다.

폐원 보상 수준은 일반재배한 사과와 경우 평균 ha당 3,811만원 수준이며 수령에 따라 최소 613만원, 최대 6,636만원까지 분포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재원의 규모는 2천ha를 폐원할 경우 762억원, 3,500ha를 폐원할 경우 1,334억원 정도이다.

현재의 과일 수급 상황에서 칠레산 과일이 국내에 출하될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지원정책인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가 불가피하다.

피해가 주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크게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보상 규모

폐원보상 규모의 예 (사과 일반재배의 예)

단위: 억원

	폐원규모 (ha)	보상액 (100%)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4년차 (60%)	5년차 (50%)
보상액(천원/10a)		3,811	3,430	3,049	2,667	2,286	1,905
경작면적10%	2,000	762	686	610	533	457	381
수준의폐원가정							

를 결정해야 한다.

사과의 직불액 규모는 보상률을 소득감소분의 80%로 할 때 2006년에는 236,000~239,000원/10a, 2007년에는 364,000~366,000원/10a 수준이며 배는 2006년 360,000원/10a, 2007년 515,000원/10a 수준으로 나타난다.

보상률을 60%로 할 경우 사과는 2006년 449~453억원, 2007년 691~695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배는 2006년 677억원, 2007년 95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소득보전 직불제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소득보장률을 60%로 하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배의 경우)에는 소득보상보다는 폐원보상을 통한 생산감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소허용보조 수준과 농가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고려할 때 소득보전 직불제는 프로그램 참여 농

가가 일전 부분을 자조금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칠레산 과일이 국내시장에 출하되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저수고 밀식재배(사과)와 Y자 밀식재배(배)와 같은 생력화와 저비용 과원관리 방식 도입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과일소비 행태가 고급화되고 있으므로 물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상표관리를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될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과정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보다는 저급품의 시장격리 차원의 과일 가공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품목별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산 과일에 대한 유통 촉진, 수출 증대, 가격 및 소득 안정화 사업에 생산자의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 ●